

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

고양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24. 5. 29.

고 양 소 방 서



- 조사기간 : 2024. 5. 29. ~ 6. 26.
- 조사대상 : 2개소(세부내역 별첨)
- 조사인원 :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4인(2인1조)
- 조사사유 : 중점 추진 10대 과제 화재안전조사
- 조사방법 : ☐ 종합조사, ☒ 부분조사
- 주요 조사내용
 1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
 2. 법 제24조, 제25조,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 3.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4.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·통보·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
 5.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
 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9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 10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방염(防炎)에 관한 사항
 1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1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5조, 제6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15.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▷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
- ▷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고양소방서 홈페이지(<https://119.gg.go.kr/goyang>)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,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전화 :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☎ 031-931-0342

화재안전조사 대상

[illegible]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